

제331회 임시회  
2014. 6. 24.(화)

#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4. 6. 24.(화)

행정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4년 6월 13일

다. 회부일자 : 2014년 6월 17일

라. 상정일자 : 2014년 6월 23일

- 제3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수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수정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강호동 안전행정국장)

가. 제안이유

○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물이 경제부지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4년이상 재직한 자 ⇒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재직한 자

- 기타 지방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 그 밖에 정치·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서 지방행정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

###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한철우)

-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부지사의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물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 경제부지사의 자격기준 중 행정 분야의 학식과 경륜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되나 개정조례안의 내용에는 ‘행정 분야’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를 언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 론 요 지 : “생략”

### 6. 심 사 결 과 : 수정의결

### 7. 수 정 안 요 지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4. 6. 23, 김형근 의원
- 수정이유
  - 본 개정조례안 대로 시행될 경우 개정안 제2조 제4호를 “기타 지방행정 분야에서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에서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자”로 구체화하면서 행정 분야가 제외됨.

- 이는 행정을 전공한 행정학 전문가를 임용할 수 없거나, 임용권자가 능력 있는 행정 분야의 전문가를 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개정안 제2조 제4호 중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를 “그 밖에 정치·행정·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수정 주요내용
  - 개정안 제2조 제4호 중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를 “그 밖에 정치·행정·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 한다.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등

#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1. 수정이유

본 개정조례안 대로 시행될 경우 개정안 제2조 제4호를 “기타 지방 행정 분야에서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에서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 구체화하면서 행정 분야가 빠짐에 따라 행정을 전공한 행정학 전문가를 임용할 수 없거나, 임용권자가 능력 있는 행정 분야의 전문가를 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안 제2조 제4호에 “행정”을 추가함.

## 2. 주요내용

- 개정안 제2조 제4호 중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를 “그 밖에 정치·행정·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 학식과과 경륜을 가진 자”로 한다.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3호 중 “4년이상 재직한 자”를 “재직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정치·행정·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서 지방행정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자격기준) 부지사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부지사로 임용될 수 없다.</p> <p>1.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p> <p>2.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 자</p> <p>3.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u>4년이상 재직한 자</u></p> <p>4. 기타 지방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p>	<p>제2조(자격기준) (현행과 같음) (1조 ~ 2조 현행과 같음)</p> <p>3.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u>재직한 자</u></p> <p>4. <u>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u></p>	<p>제2조(자격기준) (현행과 같음) (1조 ~ 2조 현행과 같음)</p> <p>(3조 개정안과 같음)</p> <p>4. <u>그 밖에 정치·행정·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서 지방행정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u></p>

#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76
----------	-----

제출연월일 : 2014년 6월 13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물이 경제부지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경제부지사 자격기준 개정 (안 제2조)
  -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4년이상 재직한 자  
⇒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재직한 자
  - 기타 지방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서 지방행정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4년이상 재직한 자”를 “재직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서 지방행정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자격기준) 부지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부지사로 임용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li> <li>2.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 자</li> <li>3.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u>4년이상 재직한 자</u></li> <li>4. <u>기타 지방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u></li> </ol>	<p>제2조(자격기준)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i> <li>2. -----</li> <li>3. ----- -----재직한 자</li> <li>4. <u>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u></li> </ol>

## 관계 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110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 :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정수 :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정수 : 1명으로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임명절차를 마쳐야 한다.

④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부시장·부지사를 3명 두는 시·도에서는 그 중 1명에게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